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90
------------	-------

발의연월일 : 2019. 5. 13.

발의자 : 서삼석 · 윤일규 · 위성곤
김병기 · 신창현 · 김영진
박재호 · 정재호 · 맹성규
손금주 · 윤준호 · 김철민
조승래 · 노옹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으며,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어업인을”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여성농어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문회의) ① (생 략)	제7조(자문회의) ① (현행과 같음)
<p>②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u>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u>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p> <p>-----</p> <p>----- <u>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어업인을</u>-----.</p> <p>③ 자문회의에는 <u>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u></p>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